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목차

- I.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 II.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 정의
- III.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 의무(5개)
- IV.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 및 금지 행위(5개)
- V.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 VI.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 VII.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

I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 제정배경 및 목적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필요

- 가족채용 비리, 직무 관련 부동산 매수,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 할 수단 마련 시급



##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공무원 행동강령 ('18.4~)은 행정부만 적용 가능
-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 (선출직 등에 대해서 제재 규정 적용이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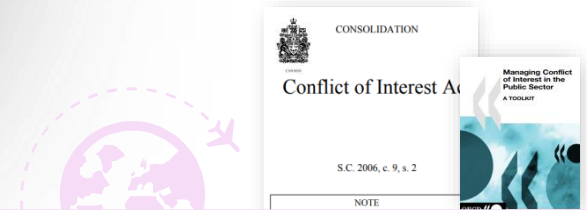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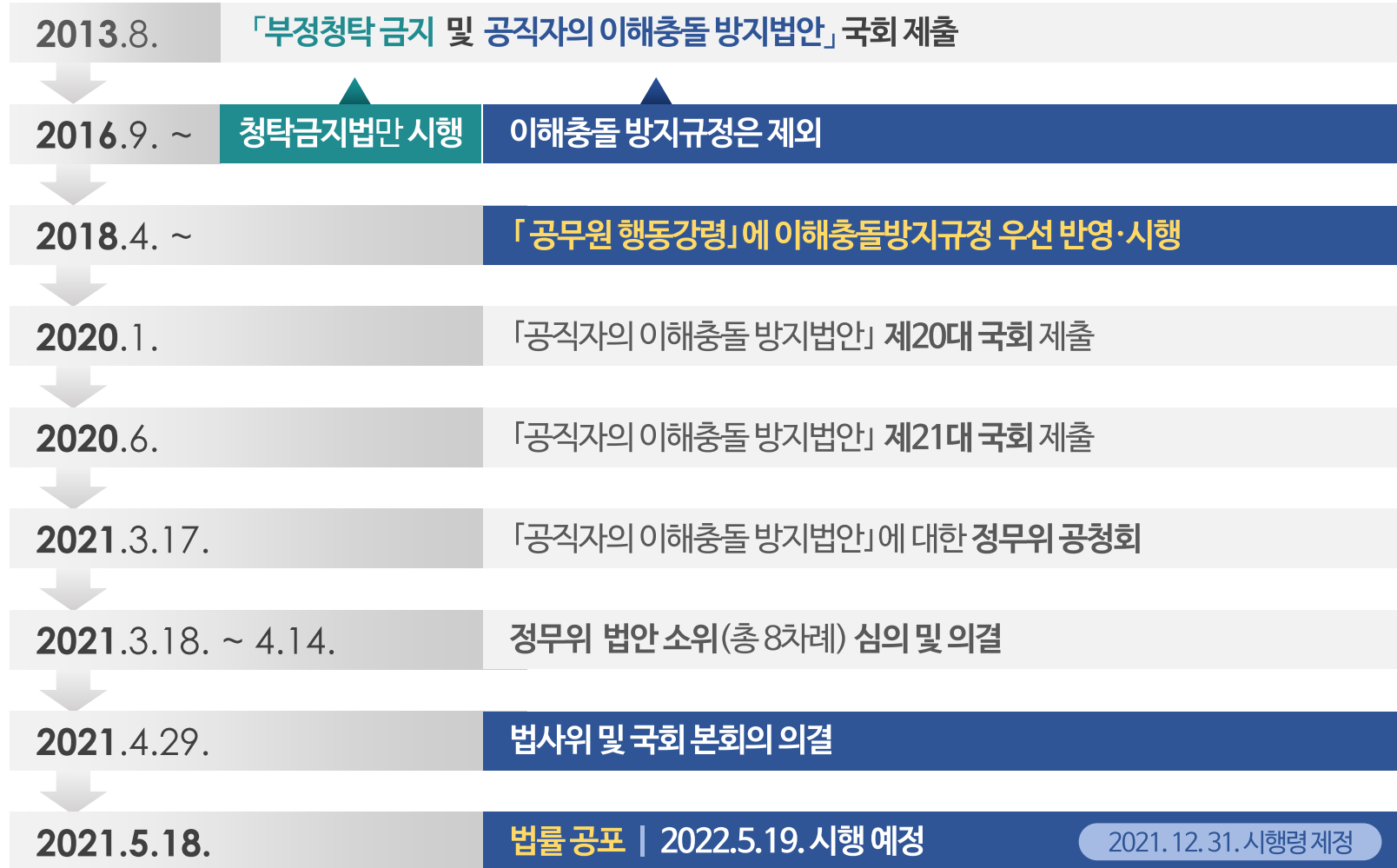
## 선진국들은 제도적 규제 추세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행 중



“**글로벌 스탠더드**” 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필요

# 입법 추진경과



#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법률 제18191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목적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신뢰 확보**

### 시기

법률 공포('21. 5. 18.) | '22. 5. 19. 시행 예정

### 내용

제1조~제4조 | 1. 총칙

법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

제5조~제16조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5개 신고·제출 의무 및 5개 제한·금지행위

제17조~제25조 | 3.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등

제26조~제28조 | 4. 징계 및 벌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공무원행동강령’ 이해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3개 분류 / 총 23개)

2016년 시행

### 청탁 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법률 제18581호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 규정  
대통령령 제32172호

###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5조의3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제6조 특혜의 배제
-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7개)

-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2022년 시행(예정)

###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법률 제18191호

#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관계 이해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3개 분류 / 총 23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 규정  
대통령령 제32172호

###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5조의3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제6조 특혜의 배제
-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7개)

-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 등 2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2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청탁금지법 조항

(신고 4, 제출 1, 제한 3, 금지 2 / 총 10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2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3장)

# ‘공무원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관계 이해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3개 분류/총 23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 규정  
대통령령 제32172호

### 공정한 직무수행 (11개)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신고·제출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신고·제출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금지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한·금지 2** (가족 채용 제한)

**제한·금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고·제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6조 특혜의 배제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7개)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한·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태 등의 제한**

**제한·금지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14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개)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제출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신고 4, 제출 1, 제한 3, 금지 2 / 총 10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법률 제18191호

### 신고·제출 의무 (5개)

신고·제출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신고·제출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신설**

신고·제출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신고·제출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신고·제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5개)

제한·금지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한·금지 2 (가족 채용 제한)

제한·금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한·금지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한·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CHAPTER

II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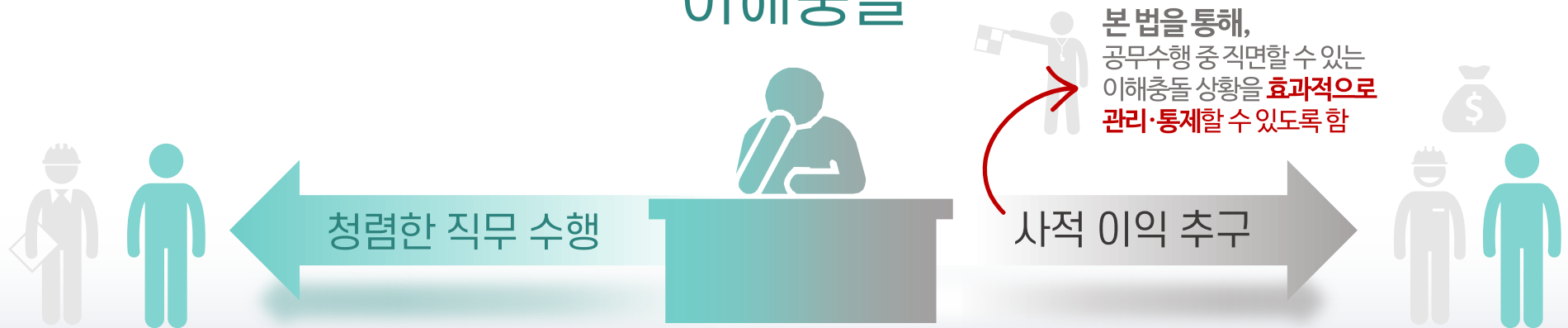


# 이해충돌이란?

제2조제4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 이해충돌



# 적용대상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란...

###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제2호 “공직자”란...

### 공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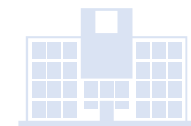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 참고 공공기관의 정의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 공무수행사인이란?

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 (제16조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1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2조제1항·제3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5조제1항)

법 위반시 공직자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

# 직무관련자란?

제2조제5호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 단체

예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 법인 / 단체

예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 법인 / 단체

예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예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 법령: 조례·규칙 포함 /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 포함

CHAPTER

III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 의무(5개)**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항

2항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공직자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직무관련자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 발생

## 신고·신청 방법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신고·신청 대상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항

2항

상세  
알아보기

##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신고·신청 방법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신고·신청 대상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2조제6호

## 참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2조제6호

참고

사적이

상세  
알아보기

##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의 기준

시행령 제3조 제1항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가. 공직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2. 생계를 같이하는

나. 공직자 자신 또는

다. 공직자 자신이

라. 공직자로 채용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된 지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2조제6호

## 참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직계혈족(친·형제자매), 직계비속(친·형제자매의 배우자, 친·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친·형제자매)

상세  
알아보기

### 퇴직한 공직자의 부서

시행령 제3조 제2항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  
 라. 공직자로 채용  
 마. 공직자로 채용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2조제6호

## 참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

상세  
알아보기

###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

시행령 제3조 제3항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제1항

## 참고 신고대상 16가지 직무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제5조제1항

### 참고 신고대상 16가지 직무

1. 인가·허가·면허 지정·등록, 등재 또는 이에 준하는
2. 행정지도·단속
3. 병역판정검사, 가
4. 개인·법인·단체 의무부과 처분
5. 조세·부담금·고 조사·부과·징수 처분에 관계되는
6. 보조금·장려금 배정·지급·처분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상세 알아보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고 대상직무

시행령 제4조

가.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항

2항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가능



공직자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長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가능

신고·신청 방법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신고·신청 대상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항

2항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공직자에게

상세  
알아보기

## 기피신청 시 제출 서면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신청 방법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신고·신청 대상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7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신고,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함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인정

- 1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조치

조치 이후,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7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상세  
알아보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3항

-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재배정
  4. 전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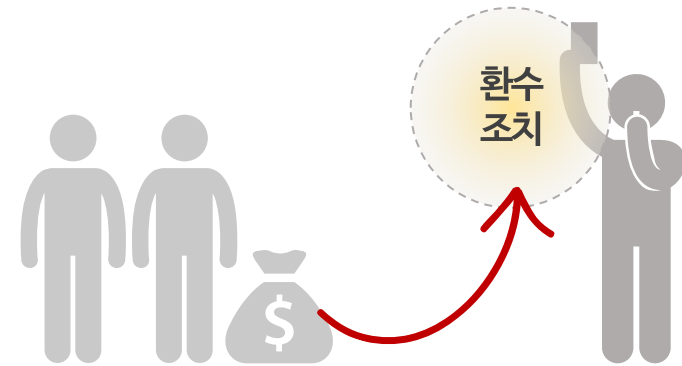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환수조치 (제22조)

####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조치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 가목

✓ 공직자 자신

✓ 공직자 **가족** (「민법」 제779조)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예:사위, 며느리)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예:장인, 장모, 시부, 시모)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예 시

#### 공직자 본인이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토지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가  
소유한 토지가 공직자가 담당하는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



공직자

#### 형제자매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주택 증축 허가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형제자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파·기피 신청

##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 나목

### 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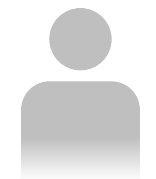
- ✓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인 법인·단체
  - 대리, 고문·자문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예시

### 공직자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이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특허업무를 수행중인 공직자에게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특허 신청을 한 경우



특허 업무 수행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 공직자 가족이 고문인 법인이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민원부서 과장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고문으로  
재직중인 로펌이 민원 신청을 한 경우



민원부서 과장



공직자의 장인이  
고문으로 있는 로펌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라목

마목

- ✓ **공직자가 임용전 2년 이내에**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법인·단체

## 예시

### A로펌이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1년 전까지 A로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가 공직에 채용되어 세무조사를 수행하던 중 **본인이 재직했던 A로펌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게 된 경우**



### B회사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B회사의 법률 관련 고문을 하던 변호사가 경찰수사관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중 **B회사의 대표를 수사하게 된 경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 바목

-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예시

## C단체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민간협력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공모사업에 해당 업무 담당자의 누나가 일정비율(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예정)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바목

-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예시

상세  
알아보기

##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간접공보사업집주명명사

시군을 소유인인년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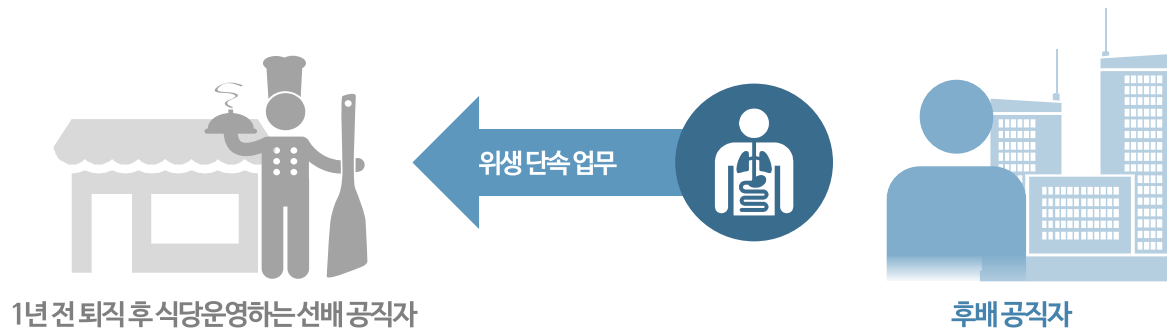
## 사목

-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전 2년 이내에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예시

### 퇴직선배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구청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다 1년 전에 퇴직한  
선배 공직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해당 공직자가 위생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사적이해관계자 (제2조제6호)

사목

-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전 2년 이내에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예시

상세  
알아보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

시행령 제3조 제2항

-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년 전 퇴직 후 식당운영하는 선배 공직자

위생 단속 업무



후배 공직자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 포함)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6조제1항에서 규정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6조제2항에서 규정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신고내용 |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상세  
알아보기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시행령 제6조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신고내용** |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 포함)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6조제2항에서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규정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등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상세  
알아보기

##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시행령 제7조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별표] 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 36. 생략.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상세  
알아보기

#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시행령 제8조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 ※ [부칙] 제2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

제6조제1항에서 규정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신고내용 | 공직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상세  
알아보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시행령 제9조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 신고**

신고내용 | 공직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내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7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대한 기관장의 조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함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인정

- 1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조치

조치 이후, 해당 공직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7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대한 기관장의 조치

상세  
알아보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3항

-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위반시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신고 및 고발 (제7조제4항)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함

### 환수조치 (제22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조치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신고 및 고발 (제7조제4항)

해당부동산보유·매수가이법또는다른 법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함

상세  
알아보기

### 신고의 절차 및 방법, 결과 통보

시행령 제10조 제4항~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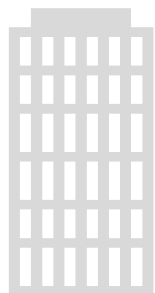
-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예시

## 소속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해당 지구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의무 발생



A기관  
(○○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소속 공직자  
○○지구 아파트 구매시

14일 이내  
신고 필요



기관장

○○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A기관 소속 공직자가  
해당 지구내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 신고 필요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신고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등)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사실을 신고**



신고대상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거래 등 사적거래를 한다는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대상자 | 제9조제1항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상세  
알아보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서면 신고 및 제출내용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대상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거래 등 사적거래를 한다는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대상자 | 제9조제1항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신고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등)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

상세  
알아보기

##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령 제12조 제2항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고대상자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대상 거래행위 및 위반시 조치사항

### 신고대상

#### 금전 및 유가증권 등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금융회사등이나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하는 행위 제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공개모집 분양, 공매·경매·입찰에  
의한 거래 행위는 제외

#### 계약 체결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 제외

###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법 제7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시행령 제10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0조, 제20조)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예시



신고사건 담당 공직자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사건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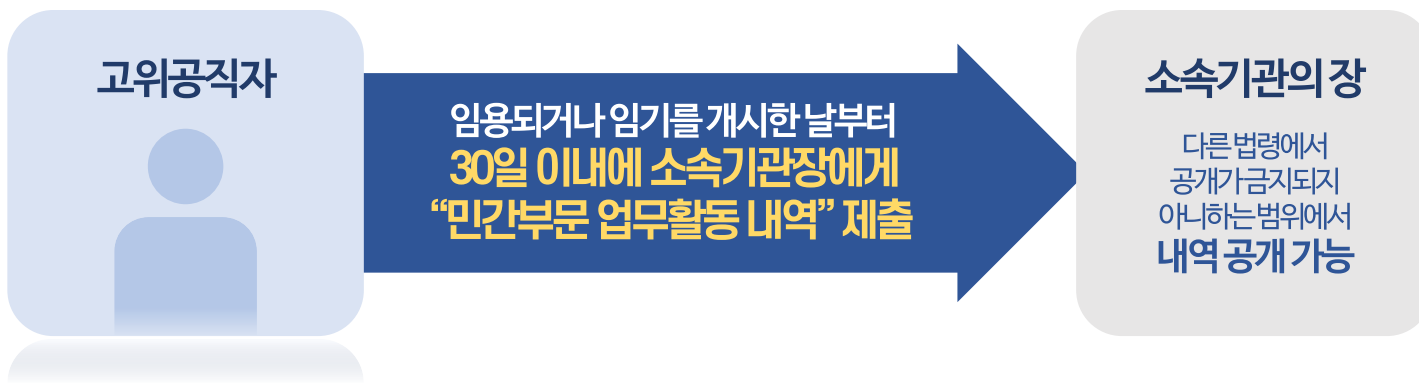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재 사항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 업무활동 내역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2조제3호

## 참고 고위공직자의 범위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제2조제3호

### 참고 고위공직자의 범위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中將 中將) 장교

#### 상세 알아보기

### 외무공무원

#### 시행령 제2조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2조제3호

## 참고 고위공직자의 범위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상세  
알아보기

##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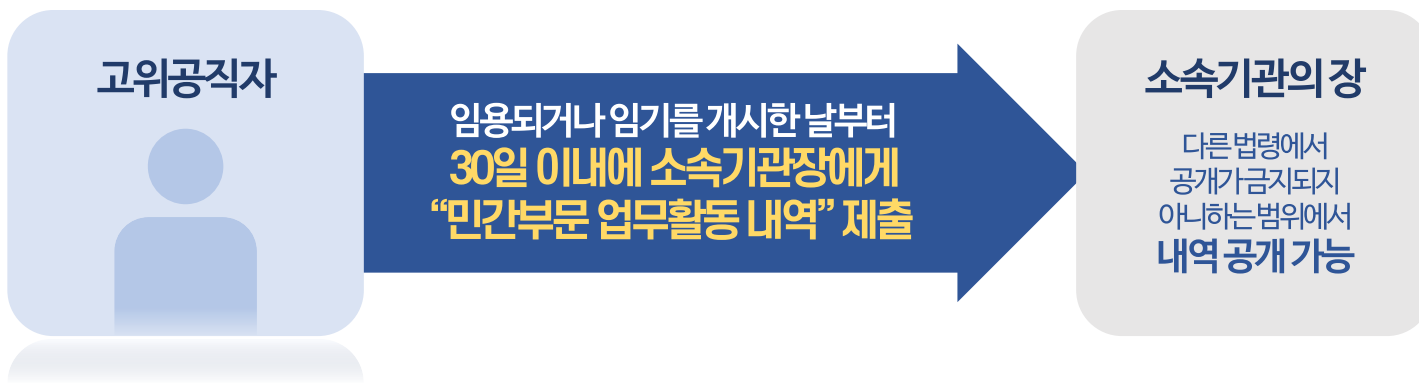
시행령 제2조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재 사항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 업무활동 내역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상세  
알아보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시행령 제11조 제1항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할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 기재 사항

####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6조, 제28조)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단,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다른 의무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예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퇴직자와 사적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 조치**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상세  
알아보기

## 퇴직자 사적 접촉 서면 신고 내용

시행령 제15조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예외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6조, 제28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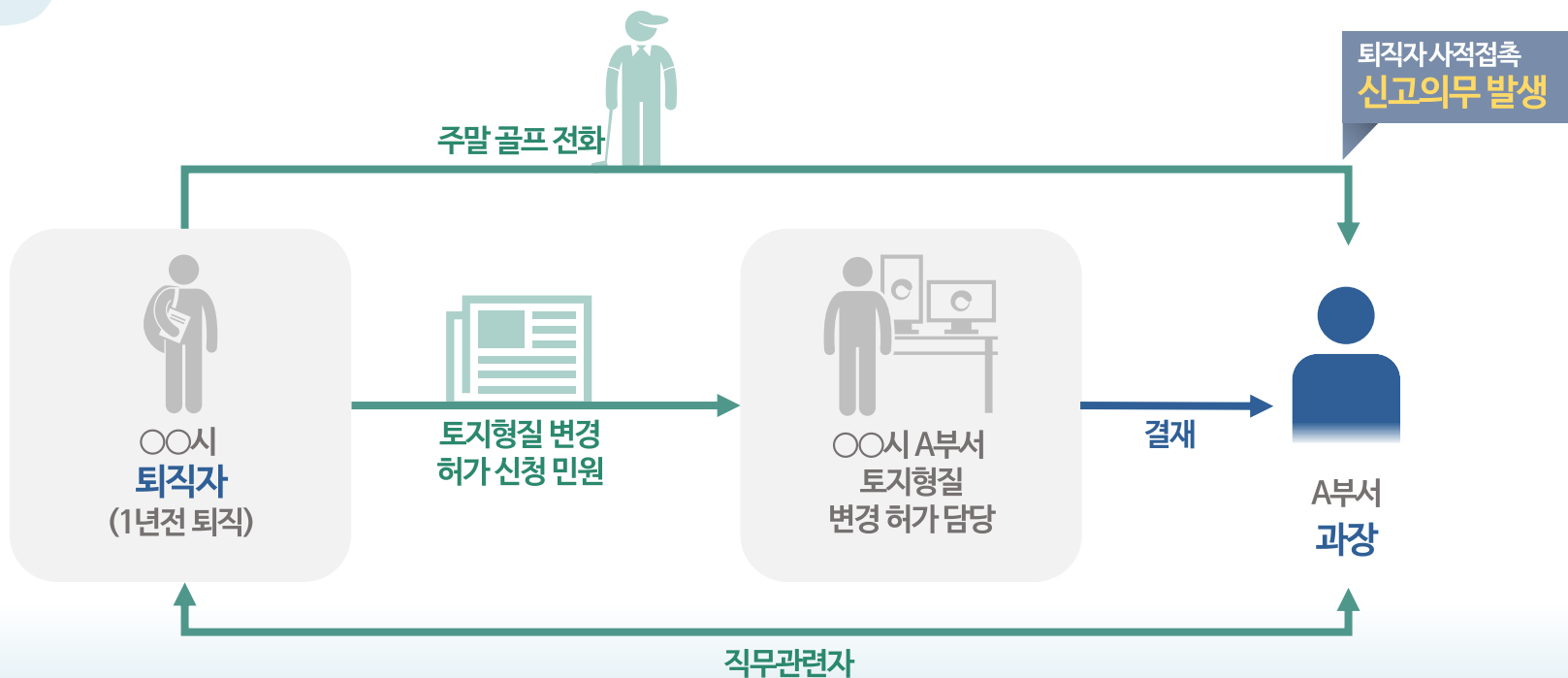
퇴직자와 사적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 조치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예시



OO시에서 근무하다 1년 전 퇴직한 자가  
 같은 시 A부서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  
 A부서 과장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골프나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함  
 → OO시 A부서 과장은 퇴직공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접촉사실을 신고

CHAPTER

IV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 및 금지 행위 (5개)**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  
 (단,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사적인 외부활동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야 함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강의를 수수하는 등의 사익 추구행위 금지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그 상대방인 제3자를 위해 조언·자문 등을 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공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  
 (단,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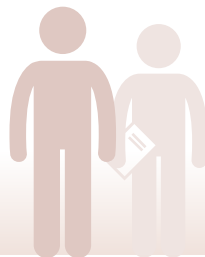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란 공직자 자신의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 있는 모든 다른 직위를 의미함. 예컨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직무상 관계가 있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는 퇴직자 단체에서 어떠한 직위도 가질 수 없음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위반시 조치 및 제재 (제21조, 제26조, 제28조)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행위가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예시



- ✓ A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A공공기관의 소속직원 부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 B공공기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중인 ○○부 송무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B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허용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가족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각호)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족 채용 제한

상세  
알아보기

## 가족 채용 제한

시행령 제13조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가족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법 제11조제1항 각호)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족 채용 제한

## 제2조제3호

### 참고 고위공직자의 범위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가족 채용 제한

## 예시



- ✓ 중앙행정기관 ○○부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때에 장관의 자녀를 공개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 채용하는 행위
- ✓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채용업무를 담당(인사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및 인사업무 담당직원)하는 인사과장의 동생을 공개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 채용하는 행위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수익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수익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등은 수익계약 체결을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물품·용역·공사등  
수익계약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등의 범위  
(제12조제1항)



- |   |   |
|---|---|
| 1 | 소속 고위공직자  |
| 2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 3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 4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 5 |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등 |
| 6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 7 |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 8 |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 9 |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상세  
알아보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1항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8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상세  
알아보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령 제14조 제2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등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물품·용역·공사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범위  
(제12조제1항)



- 1 소속 고위공직자
-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해당 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등
- 6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7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8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9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예시



- ✓ ○○부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시 소속기관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 ○○부는 법령상 계약업무 담당자(계약담당, 계약담당의 과장) 및 사실상 계약업무담당자(계약내용 관련 부서)의 가족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참고

신고·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

관련조문	가족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li> <li>※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li> </ul>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li> </ol> </li> <li>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li> </ul>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 자신</li> <li>배우자</li> </ul>
수익계약 체결 제한(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li> </ul>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 자신</li> <li>배우자</li> <li>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li> </ul>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위반시 조치사항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예시



-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데 관용차를 지속적으로 이용
- ✓ ○○공공기관 감사실장은 자녀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공용차량을 사용

공직자가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2 가족 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항

2항

3항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퇴직자 포함)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적용 범위

- 현재 소속 공직자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퇴직자)를 포함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예시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임직원이 아니게 된 후 10년까지
- ✓ 「자본시장법」  
임직원이 아니게 된 후 1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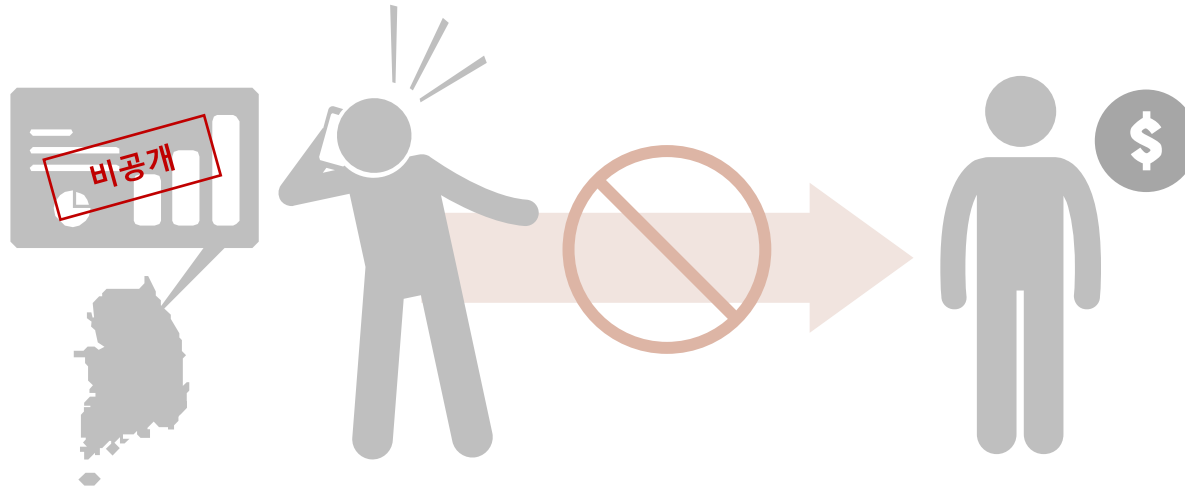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항

2항

3항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행위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항

2항

3항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사적이익의 범위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위반시 조치 및 제재 (제21조, 제26조, 제27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직자 및 제3자는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

구분		금지행위 위반내용	처벌
공직자	재산상 이익 취득	<b>제1항 위반</b>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b>제2항 위반</b>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공직자	사적 이용	<b>제3항 위반</b>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몰수·추징: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예시



- ✓ 공직자 A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B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 매입
- ✓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신도시 개발구역내 농지 매입

CHAPTER

V

#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부정한 목적의  
신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이 법에 따른 보호·보상대상에서 제외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제19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상세  
알아보기

### 위반행위의 서면 신고 내용

시행령 제19조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 나. 생략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 다. 생략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부정한

피신고자  
의견 또는  
제19조제3

# 위반행위 신고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상세  
알아보기

###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시행령 제20조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부정한

피신고자  
의견 또는  
제19조제3

# 위반행위 신고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상세  
알아보기

### 의견·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시행령 제25조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제19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시행령 제21조

##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나 수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서면 포함사항: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21조제3항)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 진행

###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통보

### 수사기관의 경우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통보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시행령 제2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 (신고내용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보완된날을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 (제19조) 을 확인 후 **이첩**

**기관이첩**  
 (제22조제1항제1호  
 ~제3호)

-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기타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
- ②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조치)
- ③ **해당 조사기관 송부** (이첩 대상 인지가 명백하지 않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 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④ 신고를 송부 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가능**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사항**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 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등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 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위반행위 신고의 조치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 이첩·송부, 종결, 이의신청 수사 개시·종료, 등

### 이첩·송부

#### 제23조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하고,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가능(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  
※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 통보

### 종결

#### 제24조

조사기관은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 가능(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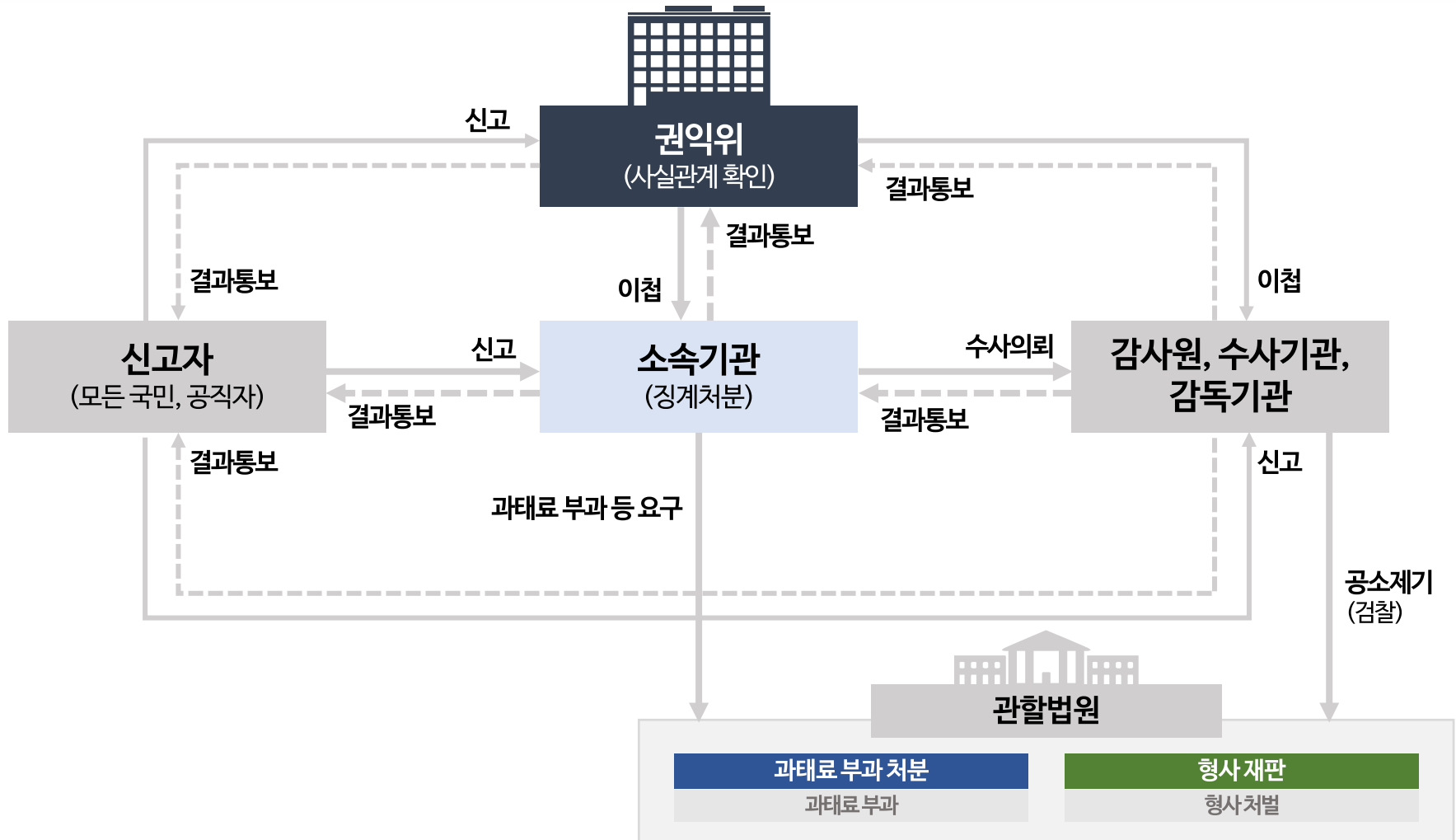
### 이의신청

#### 제26조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경위와 이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음)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수사를 시작할 때(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

# 신고사건 처리 절차(도식)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20조

##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보호

### 직접규정

-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 불이익조치 금지
- 자진신고 등에 대한 책임감면 등

### 준용규정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특별보호조치 등



신고 방해 /  
취소강요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비밀보장 및  
특별 보호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20조

##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보호

상세  
알아보기

### 신분보호 조치

시행령 제28조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 방해 /  
취소강요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비밀보장 및  
특별 보호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20조

## 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금

제20조제5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지급 가능

보상금

제20조제6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

구조금

제20조제7항  
신고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으로 인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지급 신청 가능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20조

## 신고자에 대한 보상

### 포상금

제20조제5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지급 가능

### 보상금

상세  
알아보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시행령 제29조

-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금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1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의 조치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위반 시 조치 대상 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제5조제1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제1항·제2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제1항·제2항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제3항

수익계약 체결 제한 제12조제2항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1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의 조치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상세  
알아보기

### 신고 등의 기록·관리

시행령 제16조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  
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위반 시 조치 대상 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제5조제1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제1항·제2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제1항·제2항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제3항

수익계약 체결 제한 제12조제2항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부당이득 환수

제22조

## 부당이득 환수

이해충돌방지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

공직자가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



CHAPTER

VI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제17조 **공직자이해충돌방지업무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관련 제도개선, 교육·홍보,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담당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1~3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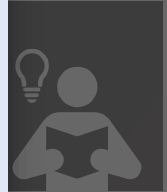
상세  
알아보기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행령 제17조

###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1~3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제17조 **공직자이해충돌방지 업무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관련 제도개선, 교육·홍보,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담당



##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1. 공직자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이 수립된 시

상세  
알아보기

### 실태조사

시행령 제18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3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비밀누설 금지

제23조 업무수행과정의비밀누설금지

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업무 담당자의 비밀누설 행위를 금지**  
(재직 중, 퇴직 후 모두 포함)



## 비밀누설 금지대상 직무

제5조 ~ 제7조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제8조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15조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비밀누설 금지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지정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상세 알아보기

## 이해충돌방지 교육

## 시행령 제30조

- 공
  - 사
  - 사
  - 그
  - 고
  - 퇴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지정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상세 알아보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시행령 제31조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자
  -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자
  -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 시행령 제33조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각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2조 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의구성·운영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 가능

1. 이해충돌방지법(제19조 제1항·제2항)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이해충돌방지법(제19조 제4항)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제34조)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체결제한, 위반행위신고 및 처리, 신고자등의보호·보상, 부당이득환수에 관한 사무)

CHAPTER

VII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 징계

제26조

## 징계

공공기관의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 징계

제26조

## 징계

공공기관의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상세  
알아보기

### 징계기준

시행령 제35조

공공기관의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 벌칙 및 과태료

제27조, 제28조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 (1/2)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형벌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 벌칙 및 과태료

제27조, 제28조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 (2/2)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천만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천만원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1천만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 벌칙 및 과태료

제27조, 제28조

##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시 제재 내용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b>징계</b>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b>형벌</b>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사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b>과태료</b>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 “청렴은 공무원의 본무 本務”



“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中



“  
관직에 임하는 법에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추적의 ‘명심보감’ 中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 감사합니다

